

2015년 제5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기총회 자료집

일 시 : 2015. 1. 17(토) 14:00

장 소 : 연대 백주년 기념관 지하1층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차례 -

I 보고안건

1. 사명·비전	1p
2. 조직현황	1p
3. 회원현황 및 자산현황	4p
4. 2014년 활동보고	6p
5. 2014년 결산보고	17p
6. 감사보고	20p

II 심의·의결 안건

1. 협회장 선출	22p
2. 감사 선출	23p
3. 협회비 인상(안)	23p

[부록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4p
--------------------	-----

2015년 제5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기총회 식순

시 간	내 용	비고
13:40-14:00	참석자 등록	
14:00-14:15	개회사 및 축사	
14:15-14:40	2014년 활동보고	
14:40-15:00	질의응답	
15:00-15:10	휴식	
15:10-16:00	심의의결 - 협회장 선출 및 감사선출, 협회비 인상(안) -	
16:00-16:20	폐회사 및 기념사진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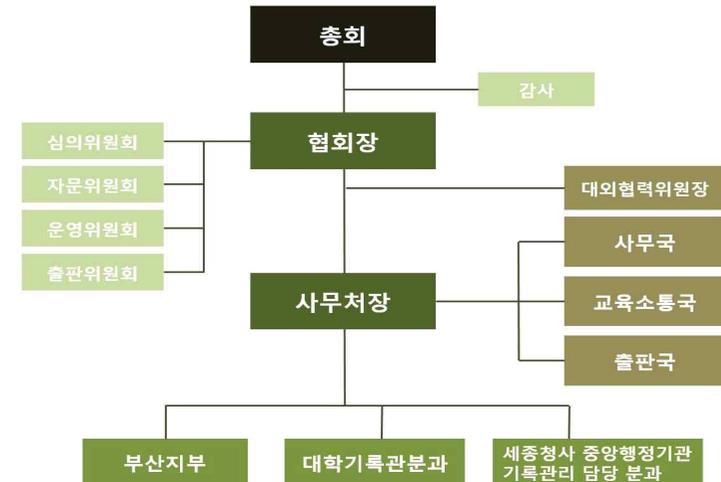
1. 보고 안건

1. 사명·비전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직 현황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조직 구성도 (2015년 1월 현재)



□ 사무처 구성 (2015년 1월 현재)

협회장		이원규(연세대학교 박물관)
사무처장		(공석)
사무국	국장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교육소통국	국장	황진현(한국기록전문가협회)
출판·국	국장	이보람(뉴스타파)
대의협력위원장		이상민(한국국가기록연구원)
집행위원		권순명, 권용찬, 문찬일, 박민영, 방현명, 양세미, 오동석, 이보람, 이생동, 이용훈, 이철환, 정태영, 최윤진

□ 자문위원회 구성 (2015년 1월 현재)

자문위원 명단	소속
곽건홍	한남대학교
안병우	한신대학교
오항녕	전주대학교
이승휘	명지대학교
이영학	한국의국어대학교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심의위원회 구성 (2015년 1월 현재)

심의위원 명단		소속
협회장 위촉	심성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회 위촉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김효진	-
	정은진	광운대학교

□ 운영위원회 구성 (2015년 1월 현재)

구 분	운영위원 명단	비고	
수도권	서울(준)	김지수(서울 용산구청)	대표
	경기(준)	정상명(경기 동두천시)	대표
영남권	경북(준)	박혁준(경북 안동시청)	대표
	대구(준)	신정엽(대구 달성군청)	간사
	부산	권승주(부산 중구청)	대표
충청권	대전·충남(준)	윤여진(충남 계룡시)	간사
	충북(준)	이창순(충청북도교육청)	대표
강원권	강원(준)	강래희(강원도청)	대표
분과모임	대학기록관	조용성(한국의국어대 기록관)	대표
	국회기록관리(준)	김장환(국회기록보존소)	대표
협회	협회장	이원규(협회장)	운영위원장
	협회장 위촉	임희연(서울특별시교육청)	
	협회장 위촉	이연창(한국외대)	
	협회장 위촉	이현정(한신대학교)	
협회장 위촉	최윤정(금융위원회)		

* 인천,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은 공석

3. 회원 현황 및 자산현황

■ 2014년 회원 및 현황 (2015. 1. 5 기준)

□ 회원구성

회원구분	인원
명예회원	1
정회원	325
준회원	68
학생회원	186
후원회원	1
계	581

□ 직능 및 분야에 따른 회원 현황

회원구분	인원
교강사	33
교육청 및 기초자치	183
중앙부처, 국기원, 헌법기관	50
졸업생	38
유관기관 종사자	34
학생	188(준회원 2명 포함)
공사공단	19
대학기록관	17
기업	18
기타	1
계	581

□ 지역별 회원 현황

지역	정회원	학생회원 및 준회원 / 후원회원	소계
서울	154명	132명	286명
경기	43명	36명	79명
인천	6명	4명	10명
강원	10명	3명	13명
대전/충남	29명	16명	45명
충북	9명	5명	14명
광주/전남	8명	6명	14명
전북	10명	12명	22명
부산	22명	21명	43명
울산/경남	12명	4명	16명
대구/경북	24명	15명	39명
합계	327명	254명	581명

□ 회원증감현황

회원구분	2013년	2014년	비고
명예회원	0	1	명예회원제도 신설
정회원	357	325	신규가입 정회원 15명
준회원	4	68	회비 장기미납 정회원 준회원 전환 65명 및 신규가입 2명 포함
학생회원	152	186	학생회원 정회원 전환 16명 및 신규학생회원 52명
후원회원	0	1	후원회원제도 신설
계	513	581	총 68명 증가

□ 협회자산 및 부채현황(실물자산 미포함)

자산		부채		비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보금자리기금 (1,2차)	20,286,916	전세금	20,000,000	
현금	62,010	기념품	5,715,000	
통장	526,338	2014달력	1,573,000	
		퇴직금	2,461,644	
소계	20,875,264	소계	29,749,644	- 8,874,380

4. 2014년 활동보고

■ 2014년 활동계획

■ 활동지표

더 많은 참여/ 실질적인 도움/ 정책과 대안

■ 필수활동

분야	담당업무	업무내용 및 목표	비고
총괄	회원관리	“회원의 날” 2014년 정회원 500명 포함 700명 목표	
	행사기획	아키비스트캠프(하계), 전진대회(동계) 창립대회, 정기총회, 기록인대회	
교육	특강	주요 저작, 방법론, 해외동향, 기타 분야 등	
	예비학교	신입생 대상 기록학 소개 (동계)	
	학습반	재학생 대상 핵심과제 소개 (하계)	
출판	소식지	웹매거진 / 연 6회 발간 / 뉴스 중심	
	달력	연간 협회 회원용 달력 제작	
	기관지	협회의 공식 기관지 / 연 2회 발간 협회의 활동보고 및 회원 실무보고	
	총서	기록관리실무 총서 기획, 출판 지원	
소통	지부/분과	지부 및 분과 등록 및 관리 2014년 3개 지부, 5개 분과 목표	
	기록소개	“이 한 장의 기록” / 기록관 협약	
	인터뷰	대표 인물 발표 및 인터뷰 / “경청”	
	국제협력	국제기구 동향 조사, 국제행사 참여	
정책	지방기록관	지방아카이브즈 설립 및 운영 전략	
	윤리강령	한국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정안	
	전자기록	전자기록이관 체크포인트 개발	

■ 프로그램 개발

분야	담당업무	업무내용 및 목표	비고
총괄	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홍보전략	홍보기획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교육	연속강좌	3~5개 강좌 개발, 강사 위촉, 운영 강좌별 5회 정도 진행	
	세미나	표준 / 정보공개 / 기록관리실무 등 격주 1회씩의 세미나 3~4개 개최되도록 운영	
	멘토링	5개 분야 정도 주요 주제별 멘토 위촉 논문 준비자와 연결 주선	
		학생회원의 요청 강좌 개설, 운영 (연 1~2강좌)	
출판	기록관연감	국내 기록관리계 총보고 / 연 1회 발간 기록관, 학술단체, 연구단체 등 망라	
소통	뉴스 취재	기록관 주요사업 / 회원 동정 / 사회 이슈	
	칼럼	월 5편 이상 / 칼럼단 위촉, 운영	
	탐방	지역 기록관, 박물관, 지부 탐방 / 연 2회	
정책	제도개선	기록관리법령 및 대통령기록관리법령 등	
	자격관리	자격인증제 / 경력인증제 개발	
	직무표준	기록전문가 담당업무 표준안 개발	
	평가모형	기록관 평가 모형 개발	
	민간진흥	민간기록관 현황조사 민간기록관진흥법안 / 마을아카이브 모형	

■ 2014년 협회장 종합보고

2014년 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그에 비해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조직구성 및 인선에 실패한 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조직면에서 권익국이 유지되지 못하였고, 소통국과 교육국을 통합할 수밖에 없었으며, 홍보업무도 사무국에 통합되었다. 운영위, 심의위, 자문위가 가동되었으나 협회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4월의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록관리계의 협의과정에서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이 협회에 설치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협회 사무처 임원들의 상근직화가 필요하지만, 잠정적으로 국장 등 임원이 직접 추진하는 업무를 최소화하고 실무 추진 인원을 다수 확보하는 수준에서 운영하고자 했던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 활동 내용이 다양해진 것에 비해 추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하반기부터 교육소통국장을 반상근하도록 조치하여 운영하였다.

향후 사무처의 조직구성과 위원회의 인선을 필두로 조직활동의 기틀을 안착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회원들의 실질적인 활동기반이 되도록 기대해온 지부나 분과의 조직화가 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서울 중심’이라는 지역적 한계, ‘집행부 중심’이라는 다양성의 한계, ‘행사 중심’이라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지부와 분과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회원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관리에 관한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정회원을 중심으로 회원카드를 일괄정비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진 다. 회원의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한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2014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전환시키고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320여명을 확보하였으며, 매우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정회원도 증가하였다. 명실상부한 회원제를 확립하기 위해 차별화된 제공 서비스 정책이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협회의 재무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였다. 기본적으로는 회원들의 회비와 보금자리기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행사별로 참가비와 후원금으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 지출은 협회 사무실 운영비, 상근 및 반상근 인원의 임금과 각종 행사지원비, 대외협력지원비 등이다. 현실적으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며, 관련 기업이나 독지가 등 후원회원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새로 후원회원(기업) 1곳이 유치되었으나 보다 확대해야 하며, 활동 후원금 모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상근인원의 임금을 공공분야 기록연구직 초봉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각 국의 사업활동비도 책정되어야 한다. 지부와 분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회비의 일정 부분을 활동비로 지원해야 한다. 그간 모금된 보금자리기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해온 부채를 청산할 예정이며,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그 밖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문제집 발행 등 비공식적 영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협회의 주된 성과는 제2회 대한민국 아키비스트 캠프를 이어 개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을 채택했으며, 기관지 『KARMA』를 창간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캠프는 작년에 비해 참가규모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으며, 진행된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도 대폭 발전된 면모를 보였다. 특히, 윤리강령의 채택을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정리하고, 이에 부응하는 직무 활동과 사회적 참여의 윤리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기관지 『KARMA』는 기존의 학회지와 달리 협회원들의 직무 활동과 일상적인 경험과 문제의식을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기획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나, 협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미진한 측면, 정제되지 못하고 다소 거친 문장 등의 문제 등이 남아 있으나,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보완과 발전이 기대된다.

ICA 서울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가기록원 및 학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가려는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현재 소통 자체가 단절된 상태이다. 협력 및 소통 체계의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기록원 단독의 행사로 진행될 경우 협회의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

협회는 민간분야의 기록관 활성화, 기록문화 증진 등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이와 관련된 활동은 세월호 추모기록 수집 및 정리사업에 한정하여 추진되었다. 민간분야 기록전문가들의 여건 개선과 활동 지원들을 위해 민간기록관리의 진흥을 위한 법제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14년 사무처 각 국 및 지부·분과 활동보고

< 사무국 활동보고 >

2014 사업 목표	<input type="checkbox"/> 회원관리 강화 및 회원배가 <input type="checkbox"/> 회원 간 소통 강화
---------------	--------------------------------------------------------------------------------

■ 회원관리 강화 및 회원배가

- 회원관리 강화를 위한 회원카드 작성 요청(2회)
 - 2013년 10월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
 - 이메일 등을 통한 회원정보 변경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으며, 제2차 회원카드 발송(2014년 12월) 결과 회원율이 20%정도에 불과했음
- 회원배가 활동
 - 2013년 회원대비 13% 증가(총회원 513명->581명으로 68명 증가/ 정회원 31명, 학생회원 52명, 준회원 1명, 후원회원 1)

■ 소식지 정기발행 및 홈페이지 구축

- 소식지 정기발행
 - 연 6회 온라인 소식지 Log 人 발행
- 협회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및 회원정보 갱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작업 추진
 -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중단

■ 지부 및 분과설립 활성화

- 2014년 1월, 7월 심의위원회 통해 부산지부 및 대학기록관 분과,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분과를 협회 공식 지부·분과로 승인하고 활동을 진행함

■ 제2회 대한민국아키비스트 캠프 및 한국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채택

- 2014년 7월 제2회 대한민국아키비스트 캠프 충남 공주 진행(약 120명 참가)
- 한국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채택

■ 세월호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설립

- 2014년 5월 협회 산하단체로 ‘세월호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설립’
- 2014년 현재 4.16기억저장소 기록물정리작업에 참여 중

< 교육소통국 활동보고 >

2014 사업 목표	<input type="checkbox"/> 회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input type="checkbox"/> 회원 간 소통을 위한 자리 마련
---------------	----------------------------------------------------------------------------------------

■ 예비학교

- 2014년 2월, 예비 기록전문가(대학원 및 교육원 입학예정자 또는 신입생)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학 예비학교’ 개최
- 30명 이상의 예비기록인 참석 및 나눔

■ 기록학 심화 스터디

- 2014년 3월~8월, 약 6개월 간 <기록학 심화 스터디> 모임 진행
- 기록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발제 및 문제은행 공유
- 스터디에서 공유한 문제은행을 협회가 취합/편집하여 판매 예정

■ 여름학습반

- 2014년 7월, 4주간에 걸친 학습반 진행
- 기록학 최신동향, 기록정보서비스와 전시, 언론과 기록관리, 기록관리와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따른 강연 및 토론 진행

■ 경청

- 2014년 3월~12월까지 총 8차례에 걸친 “경청” 진행
 - 박건홍(한국기록학회)
 - 김재순(국가기록원)
 - 김상철(노무현재단)
 -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 문정현(다큐멘터리 감독)
 - 윤은하(전북대학교)
 - Margaret Crockett, Margaret Turner(ICA)
 - 이원규(한국기록전문가협회)

< 출판국 활동보고 >

2014 사업 목표	<input type="checkbox"/> 소식지, 기관지, 달력의 발행 <input type="checkbox"/> 기록관리실무총서 및 기록관연감 발행
---------------	-------------------------------------------------------------------------------------------

■ 소식지 정기발행

- 연간 6회 발간을 목표로 추진
- 월별 기록학계 행사 및 이슈, 기록인 인터뷰, 회원칼럼 등 취재 및 연계기사 작성
- 2014년 총 4회 발행

■ 기관지 『KARMA』 창간 및 발행

- 『KARMA』 창간호 발행 (2014.7.1.)
 - 총 25편의 글과 협회 활동보고 등 게재
- 『KARMA』 제2호 발행 (2015.1.1.)
 - 총 34편의 글과 협회 활동보고 등 게재

■ 협회 2015 달력 발행

■ 총서 발행

- 국회 소속 기록전문가들의 번역서 발간 추진중
- 총서와 별개로 시험대비용 문제집 발간 추진중

■ 대한민국 기록관 연감 발행

- 우리나라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기록관 및 관련 단체, 기업 등을 망라하여 현황 및 활동상황 포괄적으로 조사, 발간 추진
-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준비 미흡, 추진 인원 부족, 비협조 등으로 성과 내지 못하고 추진 중단

< 부산지부(두레)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 2014년 활동보고

- 3.1 두레 창단식
- 7.15 두레 상반기 정기총회
- 8.30 MT
- 12.20 두레 하반기 정기총회

■ 2015년 활동계획

- 3.1 두레 창립기념회
- 6월 상반기 정기총회
- 12월 하반기 정기총회

< 대학기록관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 2014년 활동보고

일정	내용	비고
2014. 02. 10	대학기록분과 1차 정기 모임	
2014. 03. 15	대학기록관협의회 봄 학술대회 준비 모임	
2014. 05. 15~16	대학기록관리 춘계 콜로키움 지원 및 참가	대학기록관협의회
2014. 08. 21	대학기록분과 2차 정기 모임	
2014. 09. 15	대학기록관협의회 가을 학술대회 준비 모임	
2014. 11. 13~14	대학기록관리 추계 콜로키움 지원 및 참가	대학기록관협의회
2014. 11. 26	대학기록분과 3차 정기 모임	

- 대학분과 회원들이 대학기록관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대학 기록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대학기록관협의회 춘계, 추계 콜로키움 준비 등에 함께 참여하는 등 학술 및 실무 정보를 공유
- 매 정기 모임마다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관리 사업 기획 및 추진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유관 기록관 벤치마킹 방안 논의)
- 기록전문가협회 주최 아키비스트 캠프에 참가하여 대학기록관리 사례 발표
- 분기별 정기 모임을 통한 친목 도모

■ 2015년 활동 계획

- 대학 기록관리 담당자들의 실무 공유, 친목 도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 대학기록관협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 분과 소속 주요 대학 기록관이 참여하여 기록콘텐츠 개발(전시 및 출판) 공동 사업 추진
- 주제 분과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전문성있는 연구 프로젝트 추진(대학 기록관 관련 해외 연구서 공동 번역, 연구 소모임 운영 등)

<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담당분과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 2014년 활동보고

- 정기모임 실시
 - 14.6.3(1회), 7.23(2회), 9.3(3회), 10.2(4회), 11.12(5회), 12.12(6회)
 - 업무시간을 활용하여 매월 1차례(4시간) 모임 실시
- 전국기록인대회 참여(10.18)
 - 전국기록인대회 포스터세션 참여
 - ※ 개별 기관 소개 및 세종청사 기록물관리 담당자 협의회 소개
- 세종청사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11.21)
 - 충남대 기록관리학과 대학원을 초청하여 실무특강 및 견학 실시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기록관 담당자 대상 토론회 실시(12.29)
 - 「비전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 실시

■ 2015년 활동계획

- 월별 정기모임 실시
 - 세종청사 1·2·3단계 기록관 담당자를 포함한 실무 협의회 운영
- 연구성과 발표(상반기)
 - 「비전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가칭)」을 주제로 발표 추진
- 세종청사 기록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 분기 혹은 상/하반기 일정의 정기적인 견학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연구주제 선정 및 논의(하반기)
 - 기록관리 실무와 관련된 연구주제 선정 및 논의

<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활동보고 >

■ 자원봉사단의 구성

- 전국 각지의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2014년 5월 10일 협회 산하단체로 구성함
- 활동회원 91명 모집

■ 자원봉사단의 활동

- 5. 10.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자원봉사단 창단
- 5. 13. 자봉단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산하단체로 변경
- 5. 14. 진도체육관 앞 자봉단 천막 설치
- 5. 15. 자봉단 회원 모집 및 기금 모금 시작
- 5. 18.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 보존방법 안내」(매뉴얼) 온라인 배포
- 5. 23. ~ 6. 2. 서울시청 추모기록보존 1단계 자원봉사 착수 연인원 35명 참가
- 5. 27. 완주국민체육센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기록 수습 후 시민아카이브 네트워크 전달
- 6. 6.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보존 워크숍' 진행 42명 참가
- 6. 11. 안산 단원고 창고 내 보관중인 기록상자 점검
- 6. 18. ~ 7. 1.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물 1.5단계 정리 수행 연인원 58명 참가
- 6. 24. ~ 27. 안산 단원고 정문앞 추모기록 정리 수행 연인원 39명 참가
- 7. 17. ~ 25. 서울시 세월호 사고 추모기록물 1.9단계 정리 수행 연인원 46명
- 2014. 1 ~ 현재. 4.16기억저장소 기록물정리사업 참여 중

5. 2014년 결산보고

■ 2014년도 결산(2014. 1. 1. ~ 2014. 12. 31.)

1. 수입

(단위 : 원, %)

계 정	수입	비율	비 고
전기 이월액	890,443	2%	2013년 전년도 이월액
회비	34,415,020	61%	연회비, 월계좌이체, CMS, 학생회비
사업비수익	14,373,993	26%	예비학교, 학습반, 아카비스트 캠프 참가비 등
운영비 수익	1,471,400	3%	운영비 현금 출금, 기단체 지원금 등
기타 수익	529,768	1%	예금 결산이자 및 전기, 가스요금 등
후원금	4,242,000	7%	각종 행사 후원금
합 계	55,922,624	100%	

2. 지출

(단위 : 원, %)

계 정	지출	비 율	비 고
사업비	19,370,016	35%	달력, 기관지, 예비학교, 학습반, 제2회 대한민국 아카비스트 캠프, 기록인대회, 경청 비용 등
운영비	11,006,760	20%	CMS사용료, 도메인, 전화요금, 이메일 사용료,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인건비	24,256,710	44%	급여
기타	700,790	1%	회원 경조사비 및 보금자리기금 이체, 이자 등
합 계	55,334,276	100%	

3. 차기 이월액

(단위 : 원)

구분	수입	지출	잔액
합계	55,922,624	55,334,276	588,348

4. 전년 대비 증감 비교(수입)

(단위 : 원)

계정	2013년 수입	2014년 수입	비고
이월액	5,425,683	890,443	사업비 지출 증가로 이월액 감소
회비	30,160,305	34,415,020	회비납부 독려 및 회원 증가
사업비수익	7,881,250	14,373,993	주요사업 사업비 증가
운영비수익	471,300	1,471,400	운영비 현금출금 증가 및 기단체 지원금 입금
기타수입	256,414	529,768	예금 결산이자 및 전기, 가스요금 등
후원금	4,270,000	4,242,000	
합계	48,464,952	55,922,624	7,457,672

5. 전년 대비 증감 비교(지출)

(단위 : 원)

계정	2013년 지출	2014년 지출	비고
사업비지출	12,263,279	19,370,016	사업규모 확대(아키비스트 캠프, 경청 등)
운영비지출	9,662,690	11,006,760	회의 및 활동 증가
인건비지출	21,552,830	24,256,710	교육소통국장 급여 추가
기타지출	4,105,710	700,790	사전 지출 감소(기단체 회의비 등)
합계	47,584,509	55,334,276	7,749,767

6. 제2차 보금자리기금 모금 현황(2015년 1월 5일 현재)

(단위 : 원)

구분	1차 모금액	2차 모금액	2차 이자	잔액
합계	14,500,090	5,755,000	31,871	20,286,961

감 사 보 고 서

본 감사인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11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2014년 사업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로부터 2014. 1. 1 ~ 2014. 12. 31일까지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한 분석 자료는 “2014년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업계획 및 운영보고서”, “사무처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4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계 결산 보고”, “2014년 수입지출내역”, “월별 수입 지출내역서”, “은행 거래내역” 등입니다.

감사를 위한 분석 자료를 관련 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사업비 수입 및 지출규모가 모두 확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부지런히 활동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전년 대비 회원수는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정회원수는 감소한 점과 재정여건 등으로 당초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사업의 연기 또는 중단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 감사분석자료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까지의 운영, 회계의 합리적 처리 결과를 내용적으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수입과 지출은 적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4년 1월 13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감사 주서진 (날인생략)

본 감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운영 및 일반회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사무국으로부터 제출받아 일주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작년보다 총회원수는 증가하였으나(513--> 581명), 정회원수는 감소하였습니다(357-->326명). 각 기관에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회원수의 증가는 단순한 소속원의 증가라는 사실을 넘어 아키비스트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단체라는 인식이 아키비스트 사이에서 아직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협회는 이 점을 인식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2014년 활동 중에 중요한 성과는 협회 산하에 지부와 분과를 설립하였다는 사실과 제2회 아키비스트 캠프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협회 산하에 부산지부, 대학기록관 분과,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분과 등을 설립한 일은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계승하여 산하 지부와 분과를 설립하는 일을 지속하기 바랍니다. 지부와 분과의 모임이 모여져서 협회의 중심성과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회 아키비스트 캠프가 120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축하할 일입니다. 앞으로 아키비스트 캠프가 아키비스트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1년 동안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거의 동일하며, 세입 세출 및 지출결의서는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증가하였는데(경청, 아키비스트 캠프 등), 그것은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활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협회가 지니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협회의 적극적 활동을 이르기 위한 회비의 소액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협회가 올해로 5년차로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평가하면서, 아키비스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사업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하면서, 이원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수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협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월 16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감사 이영학 (날인생략)

II. 심의·의결 안건

1. 협회장 선출

■ 경과보고

- 2014년 12월 2일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14년 12월 24일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안내 공고
- 2014년 12월 24일 ~ 2015년 1월 6일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3대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 2015년 1월 7일 ~ 1월 12일 : 후보자 등록기간 1차 연장
- 2015년 1월 12일 : 이원규 후보 등록 및 후보자 등록마감
- 2015년 1월 13일 : 입후보자 자격심사 및 홍보 개시
- 2015년 1월 16일 : 사전투표 마감

■ 입후보자

이 원 규 (52세 · 연세대학교 아키비스트)

- 최종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박사 (중국현대사 전공)
- 주요경력 :
 - (전) 국가기록원 전문위원
 - (전) 한국국가기록 연구원 사무국장
 - (현)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대 회장
 - (현)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이사
- 주요논저 :
 - 한국 공공기록관리제도의 이해 (2002)

■ 선출방식

- 협회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협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함
-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투표와 사전투표로 구분되며,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름

2. 감사선출

■ 선출방식

- 협회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함
- 정관에 선출 방법 규정은 없음

3. 협회비 인상안

■ 개요

- 총회원 581명 중 회비를 납입하는 회원은 정회원 및 학생회원 포함 300여명에 불과
- 월 평균 회비수입은 28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인건비 및 임대료,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 최소한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월 30만원 부족)
- 정상적인 협회 활동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업비 및 활동비, 운영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심의·의결 내용

- 협회비 인상에 대해서는 자율인상을 기초로 하며 찬반여부 만을 심의·의결
- 협회비 인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은 차기 집행부가 세부(안)을 만들어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과 논의 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의결방식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제20조 제1항(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회), 제2항(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3항(출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회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에 의거 하여 재적 정회원 1/5이상의 의결로 진행함
- 의결 방식은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의 찬반여부와 정기총회 참석 정회원의 찬반여부로 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록 1]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관

2010년 11월 6일 제정
2011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1월 28일 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로 한다.
-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 교류 협력과 소통,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직업윤리의 신장을 통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식지와 기관지, 교육 자료 등의 제작 및 제공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 대내외 교류와 소통
 4. 기록관리 전문가의 권익보호
 5. 출판 사업
 6.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제2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회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②제31조에 의거하여 본 협회의 회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제7조(회원의 입회) ①협회 사무처는 입회 신청 접수 후 자격을 심의하고, 접수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회원자격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협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의 징계) 본 협회는 제27조의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을 따른다.(2011.3.12 개정)

제3장 조직 및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심의위원장 1인
 4. 사무처장 1인
 5. 감사 2인
 - ②감사는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 ②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다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협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타 임원과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 제13조(협회장의 직무) ①협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협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제14조(협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협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협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②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최한다.

③협회장 직무대행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명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승인
4.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6. 본 협회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협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안건·일시·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협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대리)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 1/5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출석이 어려운 경우 다른 회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총회의 제척사유) 협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22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주요 발언 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고 의장과 운영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한 후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2011.3.12개정)(2012.1.28개정)

1. 협회장, 사무처장
2. 지역지부와 분과의 대표
3. 협회장이 위촉하는 자

② 협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협회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운영위원회는 3개월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6.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의 의결
7. 제 규정의 심의 및 의결
8.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

제6장 심의위원회

제2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협회장 추천 2인, 운영위원회 추천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2011.3.12개정)

②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1.3.12개정)

③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입회·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2. 지부 및 분과의 설립·운영·취소에 관한 사항

제7장 자문위원회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협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기록관리 및 유관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본 협회의 정회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2011.3.12개정)

제29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협회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협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발전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8장 사무처

제30조(사무처의 구성) ①본 협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소속으로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협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9장 지부 및 분과

제31조(지부의 설치) ①본 협회는 전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각 지부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한다.

③각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칙을 정할 수 있다.

④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 지부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 아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분과의 설치) ①본 협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는 대표 1인을 두어야 한다.

③각 분과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칙을 정할 수 있다.

④협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 분과에 운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정) ①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3.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본 협회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4조(기금의 설치) 본 협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윤달의 경우 2월 29일까지)까지로 한다.(2011.3.12개정)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 협회의 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한다. 다만 정하기 이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결산의 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종료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산의 공개)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기록의 관리)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처분한다.

제43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 단체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2장 부칙

제44조(시행일) 본 정관은 협회 창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5조(경과조치) ①본 협회의 초대 협회장은 협회 준비위원회의 추대와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②본 협회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본 협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협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2월 28일(윤달의 경우 2월 29일)까지로 한다.